

지방체육회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

제정 2020. 12. 30.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경북체육회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2와 법률1758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2조(기능) 준비위원회는 경북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의 법인 설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체육회의 정관 작성
2. 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목록의 작성
3.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인 인가 취득 및 설립 등기
4. 그 밖에 법인 설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준비위원회가 의결로 정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준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, 그 중 한 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.

1. 체육회의 임원
2. 변호사, 회계사, 법무사 등 법인사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체육회의 업무에 이해가 높은 사람

③ 위원은 체육회의 장(이하 “회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람으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.

⑤ 준비위원회 위원 이외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, 회장이 체육회

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제4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준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준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6조(회의소집)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준비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회의소집은 안건이 정해지면 빠른 시일 내 안건·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준비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
제8조(의견청취) 준비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안건과 관련하여 체육회, 체육단체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) 준비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육회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, 체육회와 체육단체·관계기관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의무사항) 준비위원회의 위원,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준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·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준비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수당 등 지급) ① 준비위원회 위원과 준비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준비위원회는 법인 설립과 관련한 업무 대행 등의 제반비용을 체육회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규정은 준비위원회가 설립등기를 마치고 경북체육회의 회장에게 그 사무 인계를 마친 날 폐지된다.